

## 제15장 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

### 제15.1조 경쟁법과 경쟁정책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 목적의 이행을 증진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때때로 각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효과성에 대하여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따라 자국이 취하는 집행조치는 투명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조치로부터의 배제는 투명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배제가 자국의 최우선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국의 배제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당국 간의 협력 및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 내의 경쟁법 및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상호 법적지원, 통보, 협의 및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경쟁법 집행정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한다.
4.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의 어떠한 형태도 이용될 수 없다.

### 제 15.2 조 독점<sup>1</sup>

1. 이 협정은 당사국이 독점을 유지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려고 의도하고 그 지정이 다른 쪽 당사국 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지정 당사국은,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지정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통보를 제공한다.

---

<sup>1</sup> 이 조 및 제15.3조의 목적상, “유지하다”는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정되고 발효일에 존재함을 말한다.

3. 각 당사국은 규제적 통제, 행정적 감독 또는 그 밖의 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자국이 지정하는 민간 소유 독점 또는 자국이 유지하거나 지정하는 정부독점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 가. 그러한 독점이 그 당사국이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 면허의 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 나. 다호 또는 라호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지정<sup>2</sup>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하고, 관련 시장<sup>3</sup>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성, 운송과 그 밖의 구매 또는 판매<sup>4</sup> 조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
- 다. 관련 시장<sup>5</sup>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적용대상투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할 것, 그리고
- 라. 자국 영역내 비독점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에 있어, 그런 관행이 적용 대상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의 그 밖의 기업과의 거래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런 관행에 관여하는 데에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제3항은 정부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5.3조 공기업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정 조건은 개정될 수 있다.

<sup>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지정 독점 공급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그리고 지정 독점 구매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적용된다.

<sup>4</sup> 이 규정은 지정 독점이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특정요금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수립된 그 밖의 조건에 따라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요금 또는 그 밖의 조건은 다호 또는 라호와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sup>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지정 독점 공급자의 경우에는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그리고 지정 독점 구매자의 경우에는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적용된다.

1. 이 협정은 당사국이 공기업을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규제적 통제, 행정적 감독 또는 그 밖의 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그 당사국이 유지하거나 설립한 공기업이 당사국이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용, 면허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공기업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공기업이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할 것을 보장한다.

#### 제15.4조 가격차별

제15.2조 및 제15.3조는 가격차별이 공급 및 수요 조건의 고려와 같이 통상적인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점 또는 공기업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 또는 동일한 시장 안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15.5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위임한**이란 입법적 부여, 정부 명령, 지시,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통하여, 독점 또는 공기업에 정부권한을 이전하거나, 독점 또는 공기업에 의한 정부권한의 행사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하다**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독점을 설립·지정 또는 승인하거나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독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달**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달을 의미하고, 정부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독점**이란 당사국의 중앙 정부 또는 다른 그러한 독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되는 독점을 말한다.

**상업적 고려에 따라**라 함은 관련 영업 분야 또는 산업에서 민간소유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 관행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지리적 및 상업적 시장을 말한다.

**독점**이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컨소시엄 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실체를 말한다. 그러나, 배타적인 지식 재산권을 부여받은 실체는 그러한 부여만을 이유로 이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비차별적 대우**란 이 협정의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 중 더 나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기업**이란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 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부속서 15-가  
공기업의 국가별 정의

제15.3조제3항의 목적상, “공기업” 이란,

- 가.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의미 내에서의 공적 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 나. 캐나다의 경우, 「금융행정법」의 의미 내에서의 정부 기업, 상당하는 모든 주법의 의미 내에서의 정부 기업 또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주법에 따라 통합된 상응하는 실체를 말한다.